

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

화관법 기술인력 선임기준 완화! 30인 미만 사업장 “기술인력 양성자 교육”으로 가능

안녕하십니까!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입니다.

이번 달 알리미는 2018년 10월 26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6] 기술인력 선임기준이 개정, 완화됨에 따라, 그 동안 자격기준이 강하여 기술인력 선임이 불가하셨던 사업장이, 교육 이수 후 선임이 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. 기술인력 선임을 위한 양성자 교육 실시에 대한 하기 사항을 확인하시어, **영업허가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(하기 표 참조)**

1. 화학물질관리법 기술인력 선임 기준 신, 구 대조표

기 준	개 정(2018.10.26)
1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2호 가목2 내지 4절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※ 별표6 기술인력 자격증 및 학력 자격 요건 ① 화공안전·화공·가스·대기관리·수질관리·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취득자 ② 산업안전·기계·화공·수질환경·대기환경·폐기물처리·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 +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화공·산업안전·가스·산업위생관리·수질환경·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 취득 +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④ 산업안전·수질환경·대기환경·폐기물처리·위험물·가스·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·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+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	1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2호 가목2 내지 4절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(기존과 동일) 2)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한 자 + 기술인력 양성자 교육 이수시 (신규 개정) 3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+ 기술인력 양성자 교육 이수시 (신규 개정)
	종업원 30인 미만의 경우 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사업장, 신규대상 사업장)

2. 기술인력 양성자 교육에 안내

- 1) 대 상 : 종업원 30인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사업장 및 신규 대상 사업장
- 2) 교육 과정 : 경력자 과정(4일, 32시간), 무 경력자 과정(7일, 56시간)
- 3) 교육 시기 : 2018년11월 중순 ~ 12월(차후 교육 -> 2019년 초 접수 및 일정 공지 예정)
- 4) 교육 장소 : 기간별 상이(추후공지)
- 5) 신청 방법 : 세부 교육일정이 확정되는대로 **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> 알림마당**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

산업안전 환경컨설팅
장외영향평가, 설치검사
PSM/이행평가/자체감사/위험성평가
위해관리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위험물인허가
안전보건개선계획서

플랜트설계, 구매, 공사(EPC)
방폭/산업안전 EPC
전소방설계 및 공사
산업플랜트
화공/전력 플랜트
원자력/발전플랜트
특수설계&컨설팅

산업안전 환경진단
안전관리대행
산업안전진단
연구실정밀안전진단
사업장 시설물관리
비산배출진단점검